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번	안 호	9746
--------	--------	------

발의연월일 : 2017. 9. 29.

제안이유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이제는 단순히 재화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로 연결, 융복합 시키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 정부도 ‘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일자리 70만 개 창출, 세계 물류산업 10위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 등 스마트 물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보급 확대, 그리고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유도하여 국가 물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이에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7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함(안 제58조).
- 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 제목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을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을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을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연구 개발하는 경우
2.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통해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첨단 물류기술·시설의 개발·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첨단 물류 신기술·시설·장비·운송수단의 품질 확보 및 보급,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기법 및 시설·장비·운송수단에 대하여 물류 신기술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 “(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을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을 “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를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하여”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8. 그 밖에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7조(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 ① -----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② -----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p>
<p><신 설></p>	<p>1.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연구 개발하는 경우</p> <p>2.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통해 기존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을 첨단 물류시설·장비·</p>
<p><신 설></p>	

<p><신 설></p>	<p><u>운송수단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u></p>
<p>③ (생략)</p>	<p><u>3. 그 밖에 첨단 물류기술·시설의 개발·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신 설></p>	<p><u>③ (현행과 같음)</u></p>
	<p><u>④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신 설></p>	<p><u>⑤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첨단 물류 신기술·시설·장비·운송수단의 품질 확보 및 보급,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술·기법 및 시설·장비·운송수단에 대하여 물류 신기술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p> <p>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기</p>	<p>제58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촉진) ① ----- -----<u>제57조에 따른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을----- -----.</u></p> <p>② ----- -----<u>물류</u></p>

